

사업구분	완료종료	완료지속추진	추진중(추진율)	목표연월	담당부서	비고
약속	-	-	35%	사업중단	복지정책과	

1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.7월 ~ 2022.3월
- 사업대상
 -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신청·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부적합 된 노인가구
- 사업내용 : 노인단독·부부가구에 수원형 생계급여 지원
 - 지 급 액 : 단독가구 275,944원, 부부가구 486,026원(매월)
 - 산출근거 : 생계급여 선정기준 - 기초연금액

구 분	단독가구	부부가구	비고
2022년 생계급여 선정기준	583,444원	978,026원	
2022년 기초연금액	307,500원	492,000원	

- 재원확보 : 시비(100%)

2.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소요예산 (a~g합계)	기투자 (a)	2018.7월~12월		2019년		2020년		2021년		2022년		2023년 이후 계획(g)
			확보	집행(b)	확보	집행(c)	확보	집행(d)	확보	집행(e)	확보(f)	집행	
계	0	0	0	0	0	0	0	0	0	0	0	0	0
국 비	0												
도 비	0												
시 비	0	-	-	-	-	-	-	-	-	-	-	-	-
민간자본	0												

【변경사유】

- 사업 추진 중단

3. 연도별 성과지표

성 과 지 표		단위	2018	2019	2020	2021				2022. 6월까지	2022. 7월이후
					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	
당 초	타시 벤치마킹추진		√								
	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연구 실시			√	√						
	지원조례 및 지침 신설								√	√	
	복지사각지대 해소율 증가								√	√	
변 경	중앙정부 제도개편에 따른 정책변화 검토								√		
	지원조례 및 지침 신설										
	복지사각지대 해소율 증가										
누적 추진율		%	10	25	35	35	35	35	35	40	40

【변경사유】

- 보건복지부가 빈곤층 해소를 위해 2021.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추진
 - ⇒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신청·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부적합 된 노인가구에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수원형 기초보장 제도 존립 근거 불필요로 사업중단

4. 성과지표별 추진사항 (2022. 3. 31.기준)

성 과 지 표	추진현황
타 시 벤치마킹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18.10.31. “광주형 기초보장제도” 벤치마킹 / 광주광역시청 • 2018.11.14. “시민행복보장급여지원” 벤치마킹 / 대구광역시청 • 2018.11.21. “세종형 기초생계지원” 벤치마킹 / 세종특별자치시
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연구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SRI-정책-2019-23 수원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

5. 추진성과

- 수원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전 타 지역 벤치마킹 추진 및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로 제도 신설 시 시행착오 감소

6. 「2021 하반기 좋은시정위원회 평가결과 개선 및 제안사항」 추진 실적

개선 및 제안사항	추진실적(추진계획 포함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 필요 • 대상자 발굴을 위한 방안 마련 • 현금복지 정책보다 양질의 노인일자리 정책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앙정부 차원에서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2021.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정책변화로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존립 근거 불필요로 사업중단

7. 추진중 사업 분석

【문제점】

- 중앙정부 차원에서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2021.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정책변화로 수원형 기초보장제도 존립 근거 불필요
 - (보건복지부)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추진
 - 2021년 생계급여 노인, 한부모가족 수급(권)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 -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 - ☞ 단계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존립 근거 불필요
 - 2022년 특례시 출범으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적용
 - (타 지자체)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운영방안 개선 등 검토 추진
 -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방안 연구용역 실시
 -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추진
 - ☞ 기 시행 지자체는 대상자 발굴 저조 등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 증가
-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기본원칙인 보충급여 원칙(생계급여액과 수급자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)에 따라 고소득·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어 부적합 된 수원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보다 공적 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공적 소득의 역전 현상 발생 가능
- 코로나-19로 대면 상담 및 설문조사 등 기피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연구 지연
- 『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』의 지자체별 경쟁적 과잉복지 문제점 제기 및 선심성 현금복지 정책 지양 권고
 - 현금성 복지를 자제하고, 지역특화형 서비스 개발에 주력 필요
 - *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발족('19.05.27.)

【임기내 미완료 사유】

- 보건복지부의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, 2022년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적용 등 정책변화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,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기본생활 보장 강화에 기여하고 있어 수원형 기초보장제도는 추진 근거 불필요함.
 -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현황

(단위 : 가구/명)

구분	2018.12월말		2019.12월말		2020.12월말		2021.12월말	
	가구	인원	가구	인원	가구	인원	가구	인원
기초생계급여	11,095	14,285	11,493	14,464	12,187	15,100	14,045	17,119

※ 2021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0년 대비 16.6%(1,858가구, 2,019명) 증가

- 중앙의 정책변화로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를 기 시행한 지자체도 현재 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추진 중임.
 -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정책공약사업(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30%에서 35%로 단계적 상향, 재산 컷오프제 도입, 장애인·노인·아동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 추가 지급, 근로 및 사업소득 50% 공제)으로 향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및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.
 -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국비·도비·시비 매칭(90:7:3) 사업(2022년 시비 부담액 2,176백만원)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및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공약내용을 바탕으로 변경될 정책을 고려할 때 향후 복지 예산 및 시비 부담액 대규모 증가, 재정 부담도 막중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액 시비로 추진해야 하는 수원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및 예산 확보를 중단하고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.
 - 수원형 기초보장제도는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하였으나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부담 비율 증가, 지방재정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2019년 전국시장·군수·구청장협의회 산하 『복지 대타협 특별위원회』가 출범하여 지자체별 경쟁적인 과잉복지에 대한 문제 제기, 선심성 현금복지 정책 지양 권고함.
- ☞ 정책변화로 존립 근거 불필요한 수원형 기초보장제도 추진을 중단하고,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.

8. 향후계획

- 해당사항없음

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정책실명제			
담당부서	직(직급)	성 명	전화번호
복지정책과	복지정책과장	최승래	2461
	생활보장팀장	신용남	2264
	주무관	강아름	2265
협조부서	직(직급)	성 명	전화번호
복지협력과	복지협력과장	임유정	2120
	휴먼복지팀장	최명희	2485
	주무관	이은주	3222